



I 총평

2017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문제는 한마디로 미친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국가직 세무직렬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9급시험 역사에서 계산문제 3문제와 세무조정문제 1문제가 출제된 것만으로도 수험생들은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개별 문제들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되어 기존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9급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수준의 문제라면 실제로 합격예상수준의 수험생들 중 많은 인원이 세법 과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9급 문제로서의 타당성과 선택과목별 문제수준의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평상시 모의고사 고득점자들이 실제 시험에서 50~60점을, 비교적 선방한 친구들이 70점 수준이다.

II 출제경향

국세기본법(4)	1.서류송달 2.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3.국세우선권(변제순서) - 금액계산 4.보칙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국세징수법(2)	1.국세징수절차 2.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법(4)	1.세금계산서 2.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포함여부 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공통사용재화안분 4. 대손세액공제
법인세법(5)	1.손금 2.절대비와 기부금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 4.손익의 귀속시기 5.고가양수시 세무조정
소득세법(4)	1.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2.소득금액계산특례 3.세액공제 4.소득세법상 신고
상속세및증여세법(1)	1. 종합

III 기출문제해설

1. 「국세기본법」 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답> ②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열람한 때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 :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되는 경우 그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의 기한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납부기한 등 송달된 서류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정해진 기한
-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최초로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2. 「국세징수법」 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답>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따라서 필요적 기재사항인 산출근거와 납부장소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주)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2017. 국가직 9급

구분	2017년 1기	2017년 2기
과세공급가액	18,000,000	24,000,000
면세공급가액	2,000,000	6,000,000
합계	20,000,000	30,000,000

- 384,000원



2017년 합격!!

02)3280-9990

2017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② 403,200원

③ 432,000원

④ 480,000원

<답> ④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재화의 공급가액이란 당해 재화의 공급단위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안분계산 없이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따라서 공급가액이 480,000원이므로 안분을 생략하고 전액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과세표준은 480,000원이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②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답> ③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따라서 상속인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과세되므로 상속세는 면제된다.

5.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

<답> ②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에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0...3).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이 아니라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이다.
- ③ 만약 사업양도인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사업장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6.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답> ② 다자녀(60만원), 자녀양육(15만원), 출생입양(70만원)을 합하여 145만원이 다자녀세액공제액이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① 기장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립일로부터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으로 전액공제하는 것이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대상이다.

7.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에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②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 ③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답> ①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지정 기부금(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 ② 새마을금고에 대한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 불산입대상이다.

- ③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도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출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접대비의 경우에는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단서).

- ④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와 임의단체에 대한 협회비·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8.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답> ④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 ①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

9.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 ④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

10.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017. 국가직 9급

㉠. 과세재화의 외상판매액: 20,000,000원(매출에누리 1,000,000원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임)
㉡.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500,000원
㉢.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 건물(원가: 2,000,000원(시가 2,500,000원))
㉣. 업무용 소형승용차(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매각액: 1,500,000원(장부가액 1,000,000원)
㉤. 과세재화의 할부판매액: 10,000,000원(2016년 1월 31일에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016년 1월 31일부터 10회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1,000,000원씩 받기로 함)

- ① 26,5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0,500,000원
④ 33,000,000원

<답> ③ 과세표준은 30,500,000원이다.

구분	과세표준	비고
㉠ 외상판매	20,000,000원 -1,000,000원 = 19,000,000원	매출에누리는 매출에서 차감
㉡ 판매장려금수령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아님.
㉢ 건물		과세거래가 아님.
㉣ 승용차매각액	1,500,000원	사업용자산이므로 과세대상임.
㉤ 할부판매액	10,000,000원	단기할부이므로 인도기준
과세표준	30,500,000원	



11.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2017. 국가직 9급

- 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② 「조세법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 ④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답> ② 국세청장은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따라서 연간 포탈세액이 1억 이상인 자는 아니라 2억 이상인 자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인적 사항·체납액 등
- 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인적 사항, 국세추징명세 등
- ②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의 인적 사항 등
- ③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인적 사항,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1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 <답> ②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되며,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증여받은자는 납세의무가 없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비 고	증여가장양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 이월과세
①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자(이월과세적용시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적용배제	㉠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직접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큰 경우	㉠ 양도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과세되는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부당행위인가	부당행위임.	부당행위가 아님.
④ 납세의무자	증여자	수증자
⑤ 연대납세의무	수증자	없음.
⑥ 기납부 증여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필요경비 산입
⑦ 적용자산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
⑧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3.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017. 국가직 9급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답> ③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적용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 ③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7년 합격!!
02)3280-9990

2017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 ④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산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진한다.

<답> ④

- 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순서는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이다.
-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입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부인된 금액은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시가초과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는 자금지출액을 기초로 지급이자를 부인하기 위함이다.
- ③ 건설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하나, 원본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지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 아니다.

15.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송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답>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①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② 소득세법 제42조
④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16. 영리내국법인 (주)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주)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익금산입

손금산입

-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 50백만원(△유보)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 50백만원(△유보)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 50백만원(△유보)

<답> ③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처분합과 동시에, 시가를 초과하여 과대계상된 자산을 손금에 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회계	(차)토지 200백만원	(대)현 금 200백만원
세법	(차)토지 150백만원 부당행위계산부인 50백만원	(대)현 금 200백만원
세무조정	(차)부당행위계산부인 50백만원 익금	(대)토 지 50백만원 손금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50백만원(상여)

<손금산입> 토 지 50백만원(△유보)

17.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동의 없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④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답> ①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제53조제2항)

18.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2017. 국가직 9급

-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ㄷ. 주식할인발매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ㄴ.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ㄷ.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ㄷ
④ ㄷ, ㄹ, ㄴ

<답> ①



2017년 합격!!
02)3280-9990

2017년 국가직 9급

세법개론 기출문제해설

PMG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http://nambugosi.com

손금	ㄱ. 자기주식처분손실 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장부가액)
손금불산입	ㄷ. 주식할인발해차금 ㄹ. 출자임원(지분율1%)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용 : 지분율이 1%이상인 경우는 대주주이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ㅁ.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 : 업무무관이므로 손금불산입대상이다. ㅂ.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하여 지급한 교육훈련비 : 임직원이라면 손금이나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19.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 국가직 9급

-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 ②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 ③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답> ② 임대료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따라서 미수임대료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또는 실제지급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20.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 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의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2017. 국가직 9급

- 거주자 甲의 소득세 신고일: 2014년 5월 30일
- 체납처분비: 3,000,000원
- 주택D에 설정된 지당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지당권 설정일: 2014년 3월 28일): 50,000,000원
- 주택D에 대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이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2,000,000원)
- 거주자 甲이 운영하는 기업체 종업원의 임금채권: 30,000,000원(이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은 15,000,000원)
- 주택D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없음

- ① 5,000,000원
- ② 17,000,000원
- ③ 20,000,000원
- ④ 70,000,000원

<답> ①

1순위	체납처분비	3,000,000원
2순위	최종3개월임금채권	15,000,000원
3순위	소액임차보증금(우선대상)	12,000,000원
4순위	피담보채권(설정일 :3/28)	50,000,000원
5순위	일반임금채권	15,000,000원
6순위	소득세	5,000,000원
7순위	일반채권	
	매각대금 총액	100,000,000원
	*1.지당권설정일(3/28)이 소득세 법정기일(5/30)보다 빠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득세에 우선한다.	